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9095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6. 4.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권익위원회가 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·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활동인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여,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,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점검시스템 등 청렴윤리경영의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장하며, 공직유관단체 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그 자율적인 제도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의 발생 예방에 공공기관과 기업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반부패 경쟁력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.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인력 등 운영체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7의2.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윤리경영의 지원 및 공직유관단체
- 기업과의 협력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청렴윤리경영의 확산 지원) ①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·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활동(이하 “청렴윤리경영”이라 한다)을 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권고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

내부 점검시스템 등 청렴윤리경영의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자율적인 제도의 운영상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을 신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기업의 대표자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청렴윤리경영의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공직유관단체 및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4호”를 “제14호까지(제7호의2는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2조 각 호”를 “제12조 각 호(제7호의2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84조 중 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은 당해 기관의”를 “수사처는 해당 기관의”로, “제8호까지의 업무”를 “제8호까지(제7호의2는 제외한다)의 사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공공기관의 책무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 ③ · ④ (생략)	제3조(공공기관의 책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인력 등 운영체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④ · 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)
제1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 8. ~ 21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2조(기능) 위원회의 소관 사무 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7. (현행과 같음) 7의2.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윤리경영의 지원 및 공직 유관단체 · 기업과의 협력 8. ~ 21. (현행과 같음) 제28조의2(청렴윤리경영의 확산 지원) ① 위원회는 공직유관단 체와 기업이 부패방지 관련 법 령을 준수하고 투명 · 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활동(이하 “청렴윤리경영”이라 한다)을 하 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이 를 권고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9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

②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점검시스템 등 청렴윤리경영의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자율적인 제도의 운영상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을 신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기업의 대표자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청렴윤리경영의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공직유관단체 및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9조(의견청취 등) ① -----
----- 제14호까지(제7호의2는 제외한다)-----

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1. · 2. (생략) ② (생략)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 ④ · ⑤ (생략) 제84조(국회 등의 특례) 국회 · 법원 · 헌법재판소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· 감사원 또는 <u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</u>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<u>제8호까지의</u>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.	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제12조 각 호</u>(제7호의2는 제외한다) ----- ----- -----.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제84조(국회 등의 특례) ----- ----- ----- <u>수사처</u>는 <u>해당 기관의</u> ----- ----- <u>제8호까지</u>(제7호의2는 제외한다)의 사무-----.
---	--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제28조의2제3항 (청렴윤리경영의 확산 지원)	위원회는 청렴윤리경영을 운영하는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신청을 받아 그 운영상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
2	제28조의2제4항 (청렴윤리경영의 확산 지원)	위원회 청렴윤리경영 우수 공직유관단체 및 기업에 대해 포상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28조의2제3항 (청렴윤리경영의 확산 지원)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2	제28조의2제4항 (청렴윤리경영의 확산 지원)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
2. 상세 사유

- '22~'26년까지 공직유관단체 및 기업에 대한 청렴윤리경영 진단(컨설팅)을 예산사업(일반연구비)으로 추진 중
 - ※ 연도별 사업예산 : 92백만원('22년), 105백만원('23년), 153백만원('24년), 70백만원('25년) 100백만원('26년)
- 청렴윤리경영 우수 공직유관단체 및 기업에 대한 포상 등 지원은 위원장상 수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

Ⅲ. 부대의견

○ 해당 없음

Ⅳ. 작성자

○ 성명

주무관	사무관	과장	실장·국장
	이유경	주경희	

○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경	044-200-7164	yk260@korea.kr

*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